

보도시점 2024. 6. 30.(일) 12:00 배포 2024. 6. 28.(금) 08:00

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

-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, 「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」 개정

- 앞으로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.
-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(이하 ‘시행규칙’)과 「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」를 개정하고, 7월 1일(월)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.
-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하나,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‘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’에 대해서는 총40시간(교과 34시간, 실습 6시간)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 - * 단축교육 대상자 :
 - (현행) 16시간 교육 : 교사, 보육교사, 간호사
 - (신설) 40시간 교육 : 간호조무사·건강가정사·사회복지사·요양보호사·청소년상담사·청소년지도사·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
-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,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2월 「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‘돌봄인력 전문성 제고’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.

○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실기·실습을 강화한 공공·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·시행하였으며,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를 활용하여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.

* (기존) 先 채용 後 교육 → (개선) 先 교육 後 채용, 교육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을 통한 교육비 지원(교육이수 후 활동 시 교육비 환급)

□ 아울러, 아이돌보미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용이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였다.

* ('24.2월) 47개소 → ('24.6월) 57개소 [붙임 2]

○ 서울, 부산, 인천, 광주 등에서는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,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(HRD-Net, www.hrd.go.kr)등을 통해 가능하다.

*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가까운 교육기관 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(☎ 02-3479-5682, 5693~5694) 문의

□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“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【붙임】** 1.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및 고시 개정안
 2.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 현황
 3. 아이돌보미 단축 교육과정 운영 홍보 포스터

담당 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	책임자	과 장	황우정	(02-2100-6361)
		담당자	사무관	서진희	(02-2100-6365)
			사무관	조성현	(02-2100-6246)



□ 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여성가족부령 제205호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「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의료법」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아이돌보미의 자질이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

여성가족부 고시 제2024-28호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7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, 제3조제2항, 제3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1일

여성가족부장관

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**○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(신설)**

- 교육대상 : 간호조무사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영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* 학사 이상 소지자

*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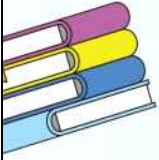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영역	분야	교과목	교육 시수	교육 과정	실습
I. 아이 돌봄 서비스 개요	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용	아이돌봄서비스 이해 및 직업윤리	1	1	
		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:	1	1	
	소 계		2	2	
II. 아동 이해와 발달의 돌봄	영아돌봄	영아 발달의 이해	1	1	
		영아 돌봄: 수유지원	1	1	
		영아 돌봄 : 식사 및 간식지원	1	1	
		영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	1	1	
		영아 신체돌봄 : 청결·위생지원	1	1	
		영아 정서 돌봄 및 지원	1	1	
		영아 놀이지원	1	1	
	유아돌봄	영아의 특성과 행동지원	1	1	
		유아 발달의 이해와 돌봄의 실제	1	1	
		유아 신체돌봄과 생활지원	1	1	
		유아 놀이지원	1	1	
	학령기 아동돌봄	유아의 특성과 행동지원	1	1	
		학령기 아동 돌봄의 실제	1	1	
	가정과의 소통	학령기 아동 생활지원 : 생활시간관리	1	1	
		양육자와의 소통	1	1	
소 계		15	15		
III.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	안전관리와 돌봄	안전한 아이돌봄의 이해	1	1	
		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: 놀이·수면 공간의 안전	1	1	
		가정에서의 안전한 돌봄 : 일상 공간의 안전	1	1	
		실외에서의 안전한 돌봄	1	1	
		긴급 상황 및 재난 대응	1	1	
		응급처치의 이해와 실제	1	1	
		응급처치 실습	1	1	
	건강관리와 돌봄	아동의 신체특성과 돌봄	1	1	
		감염병 예방 및 관리	1	1	
		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	1	1	
	장애의 이해와 돌봄	장애 이해와 장애인식 개선	1	1	
		영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	1	1	
		유아 발달지연 이해와 돌봄	1	1	
	아동권리와돌봄	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	1	1	
		아동학대 예방 실무 :	1	1	
		긍정양육 원리	1	1	
		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실천	1	1	
소 계		17	17		
IV. 실습	사전교육	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	1		1
	현장실습	현장실습	4		4
	사후멘토링	실습 사후컨설팅	1		1
	소 계		6	0	6
전체			40	34	6

<’24. 6월말 기준>

연번	시도명	교육기관명	대표 전화
1	서울	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	02-980-2377
2	서울	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	02-2692-4549
3	서울	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7014
4	서울	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	02-867-4456
5	서울	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	02-332-8661
6	서울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	02-3399-7649
7	서울	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	02-6929-0011
8	서울	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	02-3395-5141
9	서울	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322-2883
10	서울	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862
11	서울	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5908
12	부산	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	051-464-9882
13	부산	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	070-7716-6255
14	부산	엘림평생교육원	051-463-2288
15	부산	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	051-702-9199
16	대구	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	053-285-1331
17	대구	달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	053-639-1513
18	대구	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	053-472-2280
19	인천	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	032-867-5001
20	인천	인천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	032-881-6062
21	광주	광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	062-670-2168
22	대전	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	042-256-9993
23	세종	케어믹스사회적협동조합	044-865-2633
24	경기	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	031-899-7051
25	경기	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	031-876-5546
26	경기	고양보육교사교육원	031-970-8100
27	경기	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	031-467-4506
28	경기	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	032-326-3004

29	경기	성남YWCA	031-701-2501
30	경기	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	031-475-2072
31	경기	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	031-912-8555
32	강원	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926
33	강원	상지대학교평생교육원	033-730-0900
34	강원	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951
35	충북	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	043-299-7644
36	충북	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	043-258-0624
37	충북	충주YWCA	043-848-3240
38	충남	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	041-736-6244
39	충남	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	041-935-9663
40	충남	천안여자기독교청년회(YWCA)	041-575-0961
41	충남	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	041-660-1405
42	전북	전북특별자치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	063-254-0289
43	전남	전라남도아이돌봄미교육기관	061-353-0555
44	전남	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	061-744-9704
45	경북	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	054-773-5002
46	경북	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	054-440-1432
47	경북	대경대학교 평생교육원	053-850-1287
48	경북	안동YMCA	054-858-8219
49	경북	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	054-973-7016
50	경북	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	054-278-4410
51	경북	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	054-420-9114
52	경북	경북전문대학교 평생학습처	054-630-5330
53	경남	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	055-716-2382
54	경남	(사)진주YWCA	055-755-3463
55	경남	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	070-4048-6129
56	제주	서귀포시YWCA	064-762-1400
57	제주	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	064-753-8090



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영양보호사 등

단축교육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해요!

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 및 「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」 개정



📖 개정 내용?

✔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기존 12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대신 40시간 단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



📖 단축교육과정 대상?

✔ 간호조무사,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영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* 학사 이상 소지자
* 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, 가족역량강화, 장애아동, 영유아 관련 전공



📖 단축교육과정 신청?

✔ 직업훈련포털(www.hrd.go.kr)에서 교육 신청 후 시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*에서 교육 이수

*(24.6월) 양성교육기관 57개소 운영

[아이돌보미 시스템\(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\)](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) 접속

➔ 정보마당 ➔ 공지사항 확인



- 💡 **아이돌봄서비스란?**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
- 💡 **아이돌보미란?**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 교육과정 수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된 돌봄 인력
- 💡 **아이돌보미 지원은?** 아이돌보미 시스템(<https://care.idolbom.go.kr/dolbomi>) 접속 -> 교육 및 모집 -> 모집 공고 확인